

**2014년도
학산문화원 종합감사 결과**

인 천 광 역 시 남 구
(감 사 관 실)

2014년도 학산문화원 종합감사 실시결과(요약)

I 감 사 개 요

1. 감사대상 및 범위

가. 수감기관 : 학산문화원

(학산문화원, 영화공간주안, 주안영상미디어센터)

나. 감사범위 : 2011. 1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

2. 감사기간 : 2014. 5. 13 ~ 5. 16 (4일간)

3. 감 사 반 : 감사팀장 외 3명

4. 감사중점사항

가. 예산운영 및 회계집행 실태

나. 회계운영상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

다. 세입·세출예산의 비목별 용도별 사용 적정 여부

라. 물품구입·불용품 처리 등 물품 관리 실태

마. 직원 근무실태, 기타 관련 규정 이행실태 등

II 처 분 요 구

1. 총 괄

행정상조치(건)				재정상 조치(천원)				신분상 (건/명)	비고
계	시정	주의	개선	계	회수	지급	기타		
7	2	4	1	2/14,470	1/122	1/14,348	-	기관경고	

Ⅲ 주 요 지 적 사 항

◆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

- 시간외근무라 함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.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2013년부터 시간외근무시간을 최대 일 4시간, 주 12시간, 월 52시간 이내에서 인정하고 휴무일일 경우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는 내부근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주12시간 초과근무자, 휴무일 8시간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였으며, 2012년 1월과 2014년 1월에는 2011년 12월 및 2013년 12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수당을 2011년과 2013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2012년과 2014년 예산으로 집행함.

➡ 처분요구 :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담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다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 121,930원 회수 조치

◆ 특근매식비(급식비) 사용 부적정

- 특근매식비(급식비)라 함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및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식제공 경비를 말함.
-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시간외 근무자 및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특근매식비(급식비) 예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201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규근무시간(13:00~22:00)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괄 식대비 명목으로 부담 사용함.

➡ 처분요구 : [기관경고] 문화예술과에서는 특근매식비(급량비)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“주의” 촉구

◆ 예산집행 부적정

-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,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.
- ‘학산문화원’, ‘주안영상미디어센터’,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2011~2013년도 3개년간 보조금 및 자체사업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집행하면서 ‘학산문화원’ 498,516천원, ‘주안영상미디어센터’ 250,811천원, ‘영화공간주안’ 211,364천원 등 총 960,691천원을 예산이 미 편성된 상태에서 집행하거나, 기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.



처분요구 :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“주의” 촉구

◆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

-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계약 등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감독, 검사, 검수, 관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- ‘학산문화원’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에 선금 및 준공금을 지급하고 감독 및 검사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을 하였으며, ‘학산문화원’, ‘주안영상미디어센터’,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자체적으로 각종 컴퓨터, 태플릿 pc, 음향장비, 가구 등을 직접 구매하였으나, 관련 조례 등에 의한 검수 절차 미이행 및 남구청의 물품관리 항목에 누락되어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.



처분요구 : 감독기관인 남구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“개선” 조치

◆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함.

- ‘영화공간주안’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2011~2013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◆◆◆의 거주지인 ◎◎ 인근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함.

➡ 처분요구 : [기관경고] 감독기관인 남구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별도의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후 동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“주의” 촉구

◆ 세입 및 세출 통장 관리 소홀

- 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02조에 의거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, 회계별, 세입세출별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
- ‘학산문화원’에서는 사업 및 보조금 등 각종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구분 없이 수입통장에서 각종 사업비가 지출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통장관리에 소홀함.

➡ 처분요구 :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“주의” 촉구

◆ 퇴직적립금 처리 부적정
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,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구에 반환하여야 함.
- 200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 후 ‘영화공간주안’ 1,145천원, ‘주안영상미디어센터’ 13,202천원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적립금 보관 계좌에 불입하여 관리함.

➡ 처분요구 : 향후 보조금 집행과 집행잔액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고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“시정” 조치